

경향신문 폐간파동

경향신문 폐·정간사건이 일어난 것은 4·19 1년 전 24보안법파동 4개월 뒤의 일이었다. 경향신문 폐·정간사건은 해방 후 최대의 언론탄압사건이며, 최대의 법정투쟁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1959년 4월 30일 밤, 공보실이 경향신문에 발행허가취소처분을 내린 데서 발단됐다. 정부의 이러한 행정처분에 불복한 경향신문측은 법정투쟁으로 맞서 꼭 4일이 모자라는 1년 동안 지루하게 끌었던 사건이다.

정부와 언론과의 대결을 압축한 듯 한 이 사건의 가장 기록할만한 특징은 끝내 법적투쟁을 통해 폐간이 정간으로, 정간이 다시 복간으로 바뀐 것이다. 군정법령 88호가 도마 위에 올려져 대법원 연합부를 거쳐 헌법위원회에 회부, 이 법의 위헌여부를 심판하게 된 것도 언론 역사상 처음있는 일이었다. 경향측의 경영진은 정부와의 막후교섭이 실패로 돌아가자 사운을 걸고 끝내 사법부의 판가름에만 의존했다. 폐간의 이유가 되었던 다섯가지 필화기사는 표면상 이유일 뿐 처음부터 경향신문을 제거 하자는 데 있었다.

법정으로 옮겨진 이 사건은 이해 6월 26일 서울고법이 경향신문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은 부당하다고 경향측에 승소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공보실은 그날로 폐간처분을 취소하고, 무기정간이라는 새로운 행정조치를 취하였다.

경향측은 또다시 무기정간이란 행정처분의 부당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연합부가 구성되었다가 헌법위원회로 법률해석을 이첩하는 등, 한국언론사상 신문과 정부가 맞서 싸운 가장 길고도 치열한 사건이었다.

자유당말기, 집권당에 대해 가장 비판적이고 민주당 신파와 관련이 있었던 이 신문을 없애 버리려는 데 대해 한국신문편집인협회를 중심으로 한 언론계의 반발이 드셨다.

특히 편협은 긴급회의를 열어 「민주사상 큰 치욕」이라고 규정하고 당국의 폐간 처분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때 외국의 언론도 자유당정권의 언론탄압을 신랄히 비판했었다.

경향신문 폐·정간사건의 표면적이고 직접적인 발단은 1959년 2월 4일자 단평(短評)칼럼 「여적(餘滴)」. 이 신문 2월 2일자부터 석간에 연재되고 있던 「다수결의 원칙과 윤리」라는 글에 대한 단평에서 『인민이 성숙되지 못하고 그 미성숙상태를 이용하여 가장된 다수가 출현한다면 그것은 두 말 없이 폭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전제, 아래와 같이 결론지었다.

『한국의 현실을 논한다면 다수결의 원칙이 관용, 아량, 설득에 기초한다는 정치학적 논리가 문제가 아닌 것이요, 선거가 올바르게 되느냐, 못되느냐의 원시적 조건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다. 물론 「진정한 다수」라는 것이 선거로만 표시되는 것은 아니다 - 선거가 진정 다수결정에 무능력할 때는 결론으로는 또 한가지 폭력에 의한 다수결정이란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이요, 그것을 가리켜 혁명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가장된 다수라는 것은 조만간 진정한 다수로 전환되는 것이 역사의 원칙일 것이니 오늘날 한국의 위기의 본질을 대국적으로 파악하는 출발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2월 4일자 조간에 「餘滴」 기사가 나가자 오후 4시 40분께 서울시경(市警) 사찰과 형사 2명이 경향신문사에 나타나 강영수(姜永壽) 편집국장을 연행했으며 문제된 「餘滴」의 필자를 대라고 요구하면서 약 8시간이나 신문한 뒤 돌려보냈다.

다음날인 2월 5일 전성천(全聖天)공보실장은 『여적사건은 사직당국에서 조사할 것이며 행정조치는 그 조사결과를 보아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시경 사찰과 분실에서는 서울지법(朴勝浩 判事)이 발부한 「국

헌문란(國憲紊亂)선동」(형법 제90조 2항) 혐의의 압수수색영장을 편집국장(姜永壽)에게 제시, 「餘滴」원고를 비롯한 사설, 「기자석(記者席)」, 논문 등의 원고 40여점을 압수했다.

위와 같은 사태에 즈음, 경향측은 5일자 석간에 『수정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문 제화된 여적 내용에 관하여』라는 사설을 싣고 『언론자유를 수호를 위하여 불퇴전의 투쟁을 감행할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정부당국의 맹성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폭력혁명을 선동하거나 암시한 구절은 추호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향측은 7일 수색영장의 발부와 집행에 대한 준항고(準抗告)를 제기했다.

형소법(刑訴法) 제417조를 들어 엄상섭(嚴祥燮)변호사를 통해 제기된 준항고장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 「餘滴」란에 쓰여진 진정한 다수의 결정은 사건에만 의존할 수 없는 국민감정이 깊어가고 있다는 현실이 한국위기의 본질이라고 지적한 것인 만큼 범죄가 구성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 대법원의 선거소송판결을 보더라도 선거결과가 진정한 다수의 의사를 그대로 표현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압수수색영장이 부당하고,

△ 압수수색영장은 그 혐의사실이 사실자체로서 형법규정에 저촉될 때에 발부되어야 한다.

이 준항고에 대해 서울지법 형사부(주심 鄭寅祥 부장판사)는 10일 38건의 압수 원고 중 수사진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3건만은 합법적 압수로 인정하고 나머지 압수품의 환부(還付)를 명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때 수사당국은 「餘滴」필자인 주요한(朱耀翰) 논설위원을 형법 제87조(내란), 제90조(예비, 음모, 선전, 선동) 등 혐의로 입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영장의 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으며 수사당국은 그 영장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수사당국이 구속영장신청을 자진 철회한 것은 △ 법원이 영장의 처결을 보류하고 있는데다가 제33회 국회도 열릴 예정이었으므로 국회의원인 朱耀翰논설위원을 구속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는 문제와, △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했을 때의 보다 신랄한 비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도 짐작될 수 있었으며, 일단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동일혐의 사실만으로는 영장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경향 社史 참조). 사태는 급전하여 이 사건을 담당한 조인구(趙寅九) 검사(서울지검)는 2월 28일 경향신문 한창우(韓昌愚)사장과 「餘滴」필자인 朱耀翰논설위원을 형법 제90조 2항(내란선전)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검찰의 공소장에는 △ 韓昌愚와 朱耀翰은 『다수의 폭정』을 인용, 게재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할 것을 선전하였고, △ 1월 11일자 논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을 통해 이기봉(李起鵬)과 스코필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되어 있다.

여기서 「餘滴」사건 외에 명예훼손혐의로 다루어진 사건이란 경향신문 1월 15일자 석간에 실린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책임져야 할 사람은 깨끗이 책임지라』는 논설이었다.

이 논설 중 『2·4 폭력 국회파동을 전후하여 행정수반이요 자유당총재인 李承晩 박사가 멀리 진해(鎭海) 별저에서 유유자적하였고, 자유당 제2인자인 민의원의장이 사건전후 준비하였던 장문의 담화를 발표한 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해 버린 것은 무책임 또는 무성의의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고…… 『그러면서도 李起鵬의장은 병구를 끌고 스코필드박사를 방문하여 돌아가라고 권고하는 근력이 있었다 하거니와 그 동기는 아마도 스코필드박사가 시내 모 신문에 기고한 극히 격렬한 비판문 때문이었으리라는 것도 상상되는 것이며, 스코필드박사가 의장의 권고를 격분한 어조로 거부한 데 대하여 어떠한 양심의 찢림을 받았는지 알고 싶은 일이다』란 구절이 문제된 것.

요는 李의장이 스코필드박사를 찾아갔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으로써 경향신문은 이를 취소하는 기사와 사고를 냈었지만 결국 출

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필화사건이 잇따라 일어나고 기소(起訴)되는 등 수난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항간에는 경향신문 폐간설마저 떠돌게 되자 이 신문을 운영하고 있던 천주교 재단에서는 김철규(金哲珪) 신부를 내세워 대정부협상을 위한 막후노력을 전개했다.

대정부 막후절충 결과 경향신문은 3월 5일 발행인(韓昌愚)을 金哲珪신부로 바꾸는 『발행인 명의변경 신청서』를 공보실에 제출했지만 공보실은 16일 이 신청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경향측은 정부와 막후절충을 통해 약속한 대로 3월 23일 주필 李寬求씨를 부사장 겸 편집국장에 임명하고 기소 중인 朱耀翰논설위원을 면직했다. 또 편집국장이던 姜永壽씨는 논설위원으로, 정치부장 송원영(宋元英)씨를 특집부장, 편집부국장 이원교(李元敎)씨를 기획위원으로 발령했다.

경향측의 이러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경 사찰과는 경향신문 사회부 정달선(鄭達善 법조출입) 기자와 어임영(魚壬泳 시경출입)기자를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혐의내용은 △ 鄭기자는 3월 28일자 석간에 간첩 염태식(廉泰式)에 구속영장이 신청됐다는 기사를 △ 魚기자는 4월 3일 조간에 대남간첩 하 모(河 某)를 체포하는 동시 미화 1천 달러를 압수했다는 기사를 실어 국가보안법 제21조 4항(편의제공)과 동법 제24조(기록, 증거물의 효용멸실)를 위반했다는 것.

두 기자를 구속한 경찰은 李寬求편집국장과 오소백(吳蘇白)사회부장도 입건,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법조 및 시경 출입기자단은 홍진기(洪璉基) 법무장관과 박승준(朴承俊) 검찰총장에게 관대한 처분을 요청했다.

편협은 4월 11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洪법무부장관 등을 방문, 간첩사건에 있어서의 「보도의 한계」를 명확히 해줄 것을 요망하고, 언론인 구속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속기간을 연장해가며 수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이달 24일 魚壬泳기자만을 국가보안법 제2조 4항(편의제공) 등 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鄭達善기자는 기소유예, 李寬求편집국장과 吳蘇白사회부장은 혐의무로 불기소 결정했다.

이때 경향신문사에는 폐간의 이유가 됐던 두 건의 사건 외에 또 다른 사건이 있었다. 하나는 2월 16일자 석간 3면에 『사단장은 기름 팔아먹고』라는 제목으로 홍천(洪川) 지국 발신의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가 잘못되었다 하여 홍천 지국장 장원준(張元俊)이 구속되었다. 그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공갈, 동 미수혐의로 기소되었다(그뒤 4월 28일 춘천지법서 징역 1년 선고, 항소했었음).

또 하나의 사건은 4월 15일자 석간 1면 머리기사 『헌법 개정은 불심요(不心要), 4선 출마에 당선희망,李大統領談 - 보안법 개정도 반대』란 제하의 기사.

이 기사 중 보안법개정 관계의 회견기사가 오보라 해서 큰 말썽을 빚었다.

경향측은 회견「녹음」을 통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청취한 후 『민주주의는 법으로 이룩, 개정도 법에 따라야만』한다는李大통령의 말은 『보안법 개정도 반대』라는 내용으로 착오했음을 시인, 이를 정중히 취소, 정정하는 한편 회견 녹음초(錄音抄)까지 실었다. 이러한 경향의 필화사건과는 달리 공보실은 경향신문에 대해 폐간이란 극단적인 행정처분을 준비 중에 있었다.

1959년 4월 30일 밤 10시 15분 밀봉된 『경향신문 발행허가 취소에 관한 건』이란 통고서가 공보실직원에 의해 경향신문사에 전달되었다.

미리 경향신문사에 와서 대기 중이던 서울시경 형사대는 신문발행허가취소 공문이 전달되는 즉시 운전기를 정지시키고 신문사 앞에 주차 중인 모든 차량의 사기(社旗)도 철거했다.

폐간통고를 받은 날 밤 10시 15분까지 인쇄된 5월 1일자 조간은 경찰관들에 의해 압수당하였고 이미 지방에 발송된 조간도 현지경찰에 의해 압수당했다.

폐간조치의 법적근거는 미군정 법령 88호 위반이었으며 공보실 폐간통고문에 지적된 폐간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폐간이유

△ 1월 11일자 사설 『정부와 여당의 지리멸렬상』이 허위보도됨으로써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계의 혼란을 초래케 하였고,

- △ 2월 4일자 조간 「餘滴」란을 통해 허먼스교수의 「다수의 폭정」이란 논문을 건강부 회(牽強附會)하여 헌법에 규정한 선거제도를 부정하는 동시에 폭동할 것을 선동하였다.
- △ 2월 19일자 3면 「사단장은 기름을 팔아먹고」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며,
- △ 4월 3일자 조간 「간첩 하(河) 모를 체포」라는 기사는 당국의 계재금지 조치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의로 계재함으로써 앞으로 간첩 하 모와 접선하기로 되어 있는 간첩들의 도피를 용이하게 하였고,
- △ 4월 15일자 석간에李大통령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하면서 국가보안법개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안법개정 반대」라는 제목으로 국가원수의 발언을 허위보도하였다.

폐간을 당한 경향신문측은 법의 판가름을 받기로 결정, 공보실장 卞聖天을 상대로 서울 고법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과 아울러 가처분 신청을 냈다.

원고 韓昌愚(경향 사장)의 소송대리인 정구영(鄭求瑛) 김동현(金東炫) 이태희(李太熙) 김흥한(金興漢) 등의 변호사들이 제기한 「행정처분취소청구」소장은 아래와 같이 주장했다.

- △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미군정 법령 88호를 적용한 것은 대한민국헌법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이 법령은 이미 그 효력을 상실한 것이고,
- △ 설사 군정법령 88호가 유효화 하더라도 이 법령은 1946년 5월 29일 공포, 시행당시 공산당의 파괴선전, 언론을 막기 위한 조치로서 이 법령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이 법령의 목적을 일탈하여 악용한 것으로, 법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서 그 동기 와 결과가 모두 헌법 제28조에 배치하는 위법처사이고, 정부가 열거한 이유 5개 항목 가운데 네 가지는 관계인이 기소되어 현재 공판에 계류중이고 나머지 하나는 경찰이 조사 후 입건하지도 않고 해결된 것으로서 법의 확정판결을 보기도 전에 신문을 폐간한 것은 편견으로 유죄를 추정하는 것이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문의

재산권과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배치된다.

△ 이 행정처분은 정부의 행정재량권의 한계를 넘어 그 재량을 현저히 남용한 것이다. 경향신문은 현재 발행부수 20만 1천여부이며 본사 및 지사·지국 총사원은 2,759명이며 실업의 위기에 있는데 소원(訴願)의 재결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면 후일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경영상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게 될 것이므로 가처분 신청을 내게 됐다.

4월 6일자로 가처분신청을 접수한 서울 고법은 두 달이 지난 6월 12일야 첫 공판을 열었고 「사법에 대한 국민일반의 실망」이란 신문사설(동아일보 6월 14일자)이 나오는 등 여론이 들끓고 있을 무렵인 6월 26일 서울고법 특별부(재판장 洪一源 부장판사, 배석 金政圭, 崔普鉉 판사)는 마침내 경향신문 발행허가를 취소한 행정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경향은 폐간당한 지 57일 만인 6월 27일자 조건부터 신문을 발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소식을 호외로 뿌리고 27일자 조간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날 오후 3시 법원의 판결이 있자 공보실은 간부회의를 열고 대책을 숙의했고 오후 6시반쯤에는 임시국무회의가 열렸다.

장시간 계속된 국무회의는 『법원의 결정은 폐간조치가 과도하다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법원의 의견을 존중하여 발행허가 취소처분을 철회하고 발행허가를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참으로 묘한 논리였다. 행정처분의 내용이 「폐간」에서 「정간」으로 바뀌었을 뿐, 신문발행을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경향의 법정투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향측은 6월 29일 이번엔 서울고법에 「무기정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그런데 서울고법은 「폐간처분 집행정지가처분」사건을 판결함에 있어 정부가 경향신문을 폐간처분한 법적근거인 미군정 법령 88호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와 같은 서울고법의 해석에 대하여 언론계는 크게 불만을 표시하고 『군정법령 자체가 정기간행물에 대한 허가와 그 취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헌법 제13조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헌법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헌법시행과 동시에 당연히 실효되었다』는 경향측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했다.

편협은 이해 7월 4일 「군정법령 제88호 폐기조치에 관한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에서는 야당의 조정환(曹正煥)외무의 불신임안과 奎聖天공보실장의 파면 권고안을 상정했으나 모두 부결되었다.

이렇게 언론계와 야당이 맹렬한 비난을 퍼붓고 있는 가운데 서울고법(재판장 金致傑부장판사, 배석 崔允權, 金允行판사)은 『정간처분은 적법이며 미군정법령 88호는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시, 무기정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9월 8일에는 본안 소송마저 이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남은 길은 대법원의 상고심에 맡길 수밖에 없었다. 경향은 가처분신청이 고법에서 기각되자 대법원에 항고했고, 본안소송이 패소되자 불복, 상고했다.

대법원은 본안소송상고사건의 특별부 재판장에 김갑수(金甲洙)대법관, 주임에 김세완(金世玩) 대법관을 임명하고, 가처분신청항고사건의 재판장에 金世玩대법관, 주임에 백한성(白漢成)대법관을 임명했다.

그러나 12월 3일 대법원특별부는 이 사건을 연합부에 회부했다(대법원 연합부란 법원 조직법 제19조의 「종전의 심판에서 판시한 법령이 해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연합부에서 이를 판단한다).

대법원 연합부(재판장 趙容淳대법원장, 金斗一, 金甲洙, 高在鎬, 裴廷鉉, 白漢成, 卞沃柱, 吳弼善 대법관)는 해를 넘긴 1월 26일에 첫 심리를 열고 군정법령 제88호의 위헌여부를 헌법위원회에 제청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이르자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대법원의 태만이요 책임회피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 『경향신문의 행정소송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는 우리나라 재판관이 그 독립성을 상실하여 행정부권력에 뇌동(雷同)하고 맹종하고 있는 것이라는 평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헌법위원회란 부통령을 위원장으로 대법관 5명, 민의원의원 3명, 참의원의원 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다.

당시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었지 실제로는 존재하지도 않은 참의원의원을 어떻게 선출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다.

어쨌든 3·15 부정선거를 3일 앞둔 3월 12일 대통령은 대법원이 제청한 5명의 대법관을 헌법위원으로, 4명은 예비위원으로 임명했으며 민의원은 이미 3명의 위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심리에 손도 못댄 채 4·19가 터졌고 4월 26일엔 李承晩대통령이 하야성명을 냈다. 하야성명이 나오던 날 오후 대법원 연합부(재판장 趙容淳대법원장, 高在鎬, 卞沃柱, 金斗一, 裊廷鉉, 吳弼善, 金甲洙, 白漢成, 金蓮洙 대법관)는 『경향신문의 발행허가 정지의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나흘이 모자라는 1년 만에 경향신문은 복간되었다.

판결이유 요지

안건대 헌법위원회회의 위원장인 부통령이 사임하여 4293년(단기) 4월 24일 국회에서 공표되었음은 본원의 현저한 사실로서 현하의 정세로서는 신위원장의 취임시기를 예측키 어려울 뿐 아니라 참의원에서 선출될 위원 2명을 민의원에서 추가 선출키로 했으나 민의원이 우금(于今)까지 선출이 없이 위헌여부의 결정을 조속히 할 수 없으므로 원결정을 취소(헌법위원회 회부)하고 본건 행정처분의 집행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다.